

##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
우리 시는 「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公正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6월 23일



### 1. 위촉분야 및 인원

신 분	위촉분야	위촉인원	위촉기간	비 고
명예직	위원	5명	4년(단임)	비상근

### 2. 주요업무

- 가. 시민의 고충민원 신청에 따른 관련된 사안의 조사·처리
- 나. 천안시가 다수인 민원, 공공갈등 민원,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- 다.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- 라.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마.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
- 바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
### 3. 근무조건

- 가. 근무형태 : 비상근(명예직) / 안건 상정 시 소집
- 나. 활동수당 : 1일 9만원 (2시간 초과시 13만원)

#### 4. 지원자격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결격사유) 및 같은 조례 제8조(겸직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
- 나.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2) 판사 ·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3)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4) 건축사 · 세무사 · 공인회계사 · 기술사 ·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의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※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「현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적용

※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2 제4호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에 의해 4급 이상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자는 제외

※ 시민사회단체 범위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

##### 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해당사유 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# 〈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(결격사유) 해당사유 〉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정당의 당원

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

<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(겸직금지) 해당사유 >

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

2.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

다.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## 5. 전형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심사 ※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

나. 2차 면접심사 : 적격요건 심사

※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기본자세, 시민고충처리위원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, 전문성,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다. 의회 동의 대상자 확정 :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

라. 의회 동의 :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

마. 최종 발표 : 개별통지(2022. 8월 예정)

※ 최종 발표는 의회 회기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지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2. 6. 23.(목) ~ 7. 8.(금) 09:00 ~ 18:00 (16일간)

※ 지원서 등은 천안시 홈페이지([www.cheonan.go.kr](http://www.cheonan.go.kr)) 행정공고/고시 란에서 공고문에  
내려받아 사용

나. 접수장소 : 천안시청 4층 감사관 사무실

다. 접수방법 : 방문(대리접수 가능) · 이메일(dmsqls1028@korea.kr)

등기우편(충청남도 천안시 번영로 156, 불당동 천안시청 4층 감사관)

\*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내 도달해야 함

라. 제출서류

1) 지원서 1부

2)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

3)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 1부

4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
5) 비당원 확인서 1부

6)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

한하며, 자격·경력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히 제출)

## 7. 유의사항

- 가.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- 나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
- 다.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
- 라.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.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함
- 바.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르며,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천안시의 해석에 따름
- 사.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감사관 조사팀(041-521-5098)으로 문의